

서울특별시

우100-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 전화 (02) 731-6156-8 / 전송 731-6562
 처리부서 : 법무담당관실(시장본관 3층) 담당 김철수





문서번호 법무 11010- 20%

시행일자 1996. 11. />

(경유) (제1안)

수신 내부결재

참조

취급		시 장	
보존			
기획관리실장	전결		
법무 담당관			
법 제 제 장			
기안	김철수 		
			참조

제목 서울특별시부정. 불량식품동식품위생분야신고보상금지급규정중개정규정 발령

1. 서울특별시부정. 불량식품동식품위생분야신고보상금지급규정중개정규정을 별첨과 같이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하고자 합니다.

첨부 훈령안 각 1부. 끝.

(제2안)

수신 공보담당관

제목 훈령 시보게재

1. 서울특별시부정. 불량식품동식품위생분야신고보상금지급규정중개정규정을 별첨과 같이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하기 바람.

첨부 서울특별시훈령 제847호 끝.

서울특별시장

(제3안)

수신 보건위생과장

제목 훈령발령 통보

1. 서울특별시부정. 불량식품동식품위생분야신고보상금지급규정중개정규정을 별첨과 같이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토록 조치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람.

가. 발령예정일 : 1996. 11. 15.

첨부 서울특별시훈령 제847호(생략).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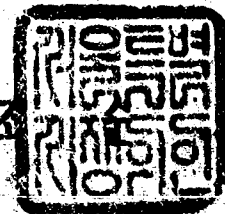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부경. 불량식품등식품위생분야신고보상금지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96년 11월 15일

서울특별시장 조



서울특별시부정·불량식품등식품위생분야신고보상금 지급규정중개정규정안

1. 개정이유

위생업소의 퇴폐·변태 영업행위와 부정·불량식품제조등 위법사항에 대한 PC통신 신고 및 엽서 신고자에게 신고 보상금 지급이 상당기간 소요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퇴폐·변태 영업행위와 부정·불량식품등 식품위생분야 위반 업소 신고자에게 신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금까지 “행정처분을 한 후”지급하여 왔으나 그 지급 기간이 지나치게 장기간 경과되어 이를 개정 “행정처분전 행정처분청에서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와 “신고자가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 신고한 경우”에도 신고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나. 표시기준 위반, 유통기한 경과, 부패·변질식품 등을 진열 판매하였을 경우에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안 별표1의 12호란).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필요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별첨)

서울특별시부정·불량식품등식품위생분야신고보상금지급규정
증개정규정안

서울특별시부정·불량식품등식품위생분야신고보상금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지급시기) 신고한 사항은 관할기관에서 확인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을 지급한다.

1. 행정처분을 한 후
2. 행정처분 전 행정처분청에서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
3. 신고자가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 신고한 경우

별표1의 12호 신고대상내용란중 “기타 신고한 사항 중 신고자의 사기 진작이나 사안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보상을 지급을 결정한 경우”를 “표시기준 위반, 유통기한 경과, 부패·변질식품 등을 진열 판매하였을 경우”로 한다.

별표1의 16호란 다음에 17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기타 신고한 사항 중 신고자의 사기진작이나 사안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보상을 지급을 결정한 경우	3만원	공통
----	--	-----	----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新·舊 條 文 對 比 表

現 行				改 正 案			
<p>제4조(지급시기) 신고한 사항은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고 행정처분을 한 후 보상금을 지급한다.</p> <p><별표1></p>				<p>제4조(지급시기) 신고한 사항은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행정처분을 한 후 2. 행정처분 전 행정처분청에서 위반 사항을 확인한 경우 3. 신고자가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중립자료를 제출 신고한 경우 <p><별표1></p>			
구분 번호	신 고 대 상 내 용	보상금	분야별	구분 번호	신 고 대 상 내 용	보상금	분야별
12	기타 신고한 사항 중 신고자의 사기진작이나 사안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보상금 지급을 결정한 경우	3만원	부경·분양·식품	12	표시기준 위반, 유통기한 경과, 부패·변질식품 등을 진열 판매 하였을 경우
17	<신설>	<신설>	<신설>	17	기타 신고한 사항 중 신고자의 사기 진작이나 사안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보상금 지급을 결정한 경우	3만원	공통

서울특별시

우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31번지 / ☎731-0203 / FAX 730-0105 담당 후 允
 처리부서 : 보건위생과(중로구 수송동 중로구청내 별관3층)

문서번호 보위05441 - 1858

시행일자 1996. 11. 5

경 유

받는곳 법무담당관

참 조

선 결		지 시	
전	일자 시간	결 정 일	계 장
수	번호	행 정 관 계 장	계 장
처 리 과	상 관	계 장	사 제 장
담 당 자	법 제 관	사 제 장	사 제 장

제 목 서울특별시부정. 불량식품등식품위생분야신고보상금지금규정 발령의피

1. 서울특별시부정. 불량식품등식품위생분야신고보상금지금규정중개정규정안 훈령을 발령과 같이 통보하오니 발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서울특별시부정. 불량식품등식품위생분야신고보상금지금규정중개정규정안 5부. 끝.

보 건 위 생 과 장

김민준